

				처 장
기 안	법제교류 협력담당관	기획조정관	차 장	김민석
이기재	김남연	김민석	김계룡	
협 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유채원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방문결과 보고

2019. 5.



법제처

기 획 조 정 관 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1. 방문 개요	1
2. 우즈베키스탄 포럼 참석 및 축하	2
3. 한국 문화예술의 집 방문 및 면담	7
4.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방문	12
5.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 방문	14
6.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면담	20
7.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22
별첨1. 우즈베키스탄 약황	24
별첨2. 처장님 축하	25
별첨3. 말씀자료	29
별첨4.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의 양해각서	35
별첨5. 우즈베키스탄 측 프로필	41

1 방문 개요

1. 일정: 4.24.[수]~4.27.[토], 2박 4일
2. 방문 국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3. 출장단: 총 5명

연번	성명	직위
1	김 외 숙	법제처장
2	김 형 수	기획조정관
3	김 남 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4	이 기 재	사무관
5	전 병 희	사무관(수행비서)

4. 일자별 주요 공식 일정

날 짜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일차 4.24.(수)	17:00 (한국시각)	• 한국(인천) 출발	시차 -4h, 비행시간 7h OZ573
	20:20 (현지시각)	• 타슈켄트 도착	
2일차 4.25.(목)	오 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포럼 참석(10:00~)	* 처장님 축사
	오 찬	• 포럼 행사장(12:00~14:00)	
	오 후	• 타슈켄트 현지 시장 방문	
	오 후	• 한국문화예술의집 방문 / 박 빅토르 의원 면담	
	만 찬	•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방문	
3일차 4.26.(금)	오 전	• 의회 입법연구소 방문(10:00~12:00) • 양해각서 체결 행사 및 의회 세미나 참석	
	오 찬	• 입법연구소장과의 오찬	
	오후	• 법무부장관 면담(17:00~18:00)	
	만 찬	• 한국법제연구원 방문단과 만찬	
	21:20 (현지시각)	• 타슈켄트 출발	
4일차 4.27.(토)	07:45 (한국시각)	• 한국(인천) 도착 (+1일)	KE942

1. 포럼 개요

- (포럼 명칭) Tashkent Law Spring
 - 공식 주제 : Law in an era of rapid modernization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
- (일시/장소) 4.24.-25. 우즈베키스탄 엑스포 회의장
- (세부 주제)
 1. «Good governance» 선정(善政), 처장님 축하 관련 주제
 2. «Ensuring the rule of law and reforming the judicial and legal system»
법치주의 및 사법·법률 체계 개혁
 3. «Active investment policy» 적극적인 투자 정책
- (개회식)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개회사 후 처장님 첫 번째 축하

2. 처장님 포럼 축사문

□ 인사말씀

앗살라무 알라이쿰(이슬람권 공통 인사).

루슬란벡 다블레토프 (Ruslanbek Davletov) 장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라 불렸던 이 아름다운 타슈켄트에 오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속담 가운데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웃은 새 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처는 법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고 있어 매우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 적극행정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수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법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라는 규제 개혁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령과 현실과의 간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법령을 다루는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자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법제처는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제 시스템 발전의 필요성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노력뿐 아니라 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제정,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법령의 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법령의 개정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법지원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법령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법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심사하고, 국민에게 알린 후, 새로운 법령으로 확정하는 모든 절차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시 소요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업무 관련자들이 진행과정을 함께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급변하는 시대에 법령이 제때 대응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무리 말씀

오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개최한 포럼의 주제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법령이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 저를 초청해주신 **루슬란벡 다블레토프 (Ruslanbek Davletov)** 장관님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처의 오랜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라흐맛(감사합니다).

3. 방문사진





1. 한국 문화예술의 집 방문

-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① 2014.6월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건축에 합의, ② 2016.5월 양국 총리(우즈벡 측 미르지요예프 당시 총리) 임석 하에 기공식 개최, ③ 2018.11월 준공 ④ **2019.4월 개관**(문재인 대통령 우즈벡 국민 방문에 맞추어 개관 행사)
 - 30,000m²의 부지에 6,063m²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
 - 공연장 470여석, 대연회장 500석, 소연회장 100석, 사무실 및 전시장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5월 한국문화예술의 집 기공식, 2019.4월 개관식 주관(기공식 당시에는 총리)
 - 우리 정부는 103.7억원의 건설비를 부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슈켄트 인근 부지 제공 △기자재 면세 통관 및 건축자재 염가 제공 △노동력 제공 및 주요 자재의 항공운송, 공사대금 특별금융지원 등으로 지원

2. 박 빅토르 하원의원 면담

○ 박 빅토르 회장 인적사항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 회장 (만 60세) ○ 2017. 1월 - 현재 제7기 고려문화협회 회장 ○ 2015년 - 현재 하원의원 ○ 2012년 - 제6기 고려문화협회 회장 ○ 1997년 - KARDISE 건설회사 회장 ○ 1985년 - 잠불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1958년 12월 26일생
---	---

- 고려문화협회는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대표단체로 14개 광역단체(12개 주, 타슈켄트 특별시, 카라칼팔스탄자치공화국)에 고려문화협회가 있고 타슈켄트에 중앙고려문화협회가 있음.
- 박 빅토르 회장은 건설 분야에 오래 종사하였으며 2015년부터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

3. 면담

□ 박 빅토르 회장 언급 요지

-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님의 방문을 환영함. 문재인 대통령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한국문화예술의 집이 개관하는데 힘써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함. 한국 문화예술의 집이 개관하여 앞으로 고려인의 문화 활동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하고, 한국-우즈벡 양국 간 우정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이곳 문화예술의 집은 전시실, 공연장, 회의장 등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각종 행사에 매우 좋은 환경이며, 조금 후에 우리가 준비한 공연과 이번에 제작한 영화*를 상영해드리도록 하겠음.

* 중앙아시아 이주 당시의 애환을 담은 영상 시청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는 예전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성동본 금혼 및 원래의 성씨 유지(박, 김 등)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노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처장님 말씀 요지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님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양국 우호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한-우즈베키스탄 우호협력의 상징이자 고려인의 정서적·문화적 구심점이 될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하여 감회가 남다름.
- 회장님과 같이 우즈벡 사회의 지도층으로 최대한 많이 진출하면 양국 우호관계의 더욱 튼튼한 중개자로서 고려인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3. 방문사진







4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면담 및 만찬

1. 면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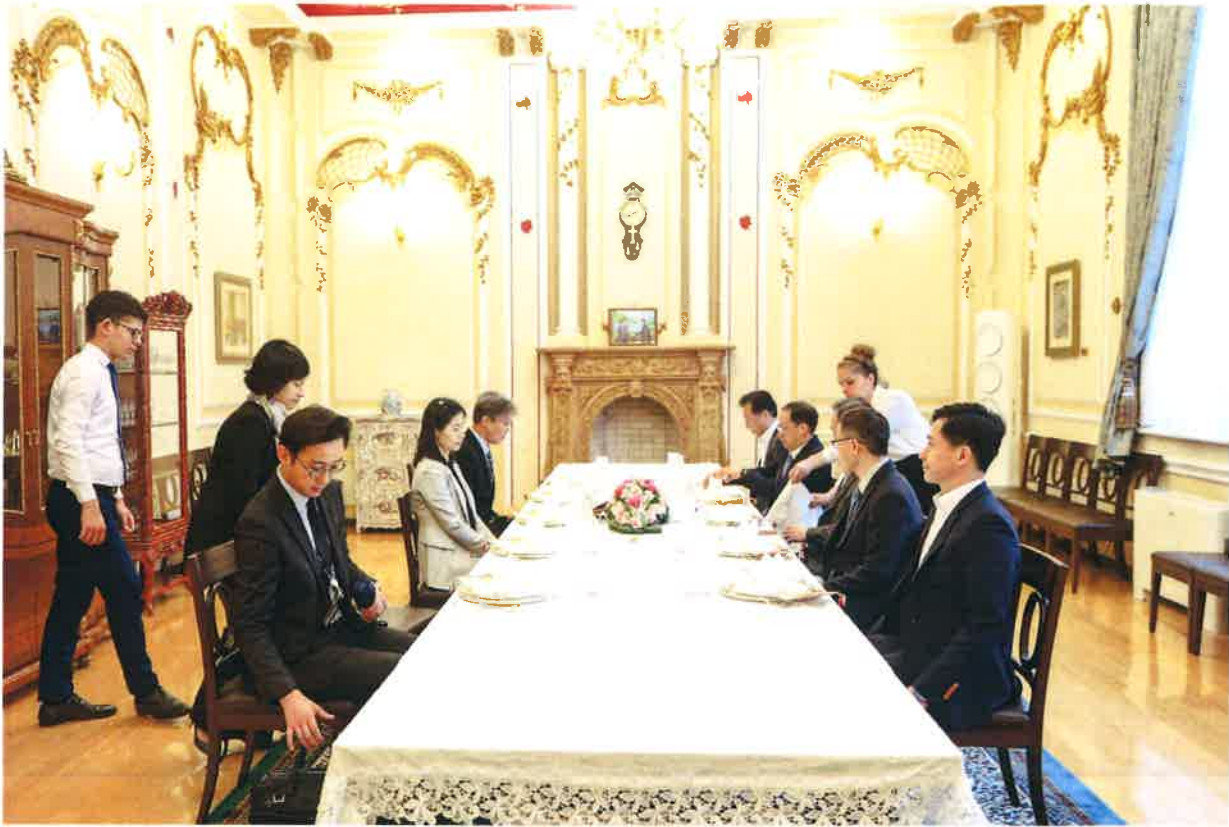
- 일시/장소 : 4. 25. (목) 18:30 /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저
- 참석자
 - 법제처 측(5명) :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기재 사무관, 전병희 사무관
 - 대사관 측(5명) : 권용우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김재우 참사관 등

2. 논의내용

- 우즈베키스탄 방문 환영 인사 및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내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전달
-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협력 시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 논의

3. 방문사진





1. 방문개요

- 일시/장소 : 4.26.(금) 09:30 - 12:00 /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
- 참석자
 - 법제처 측(7명) :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기재 사무관, 전병희 사무관, 김재우 참서관, 알렉 장(통역)
 - 우즈베키스탄 측 :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입법연구소 소장 겸 하원의원, 상원 의장, 의원 6명(박 빅토르 하원의원 포함), 연구소 직원 40여명 배석

2. 논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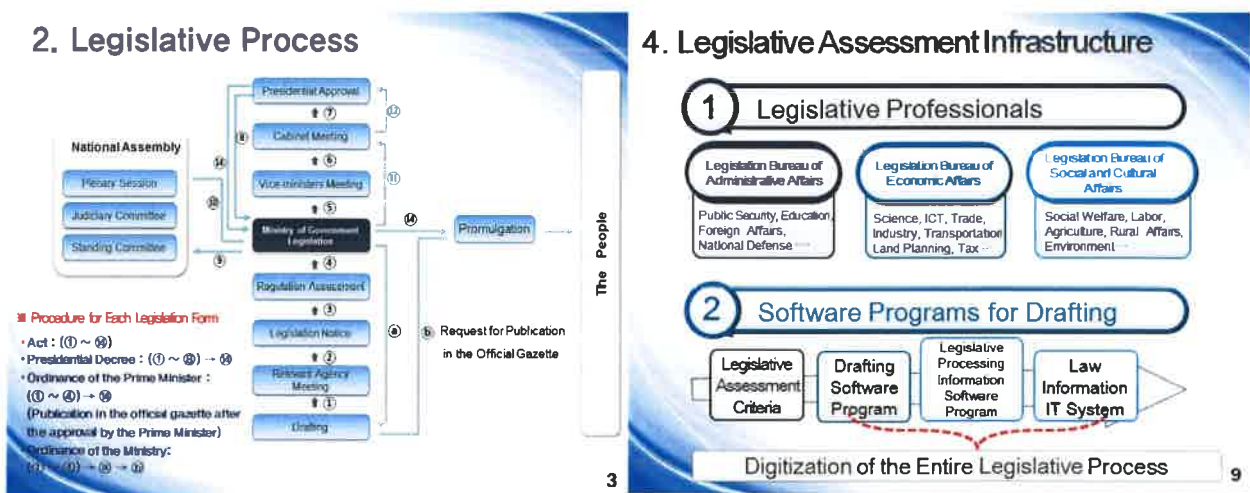
○ 처장님 언급 요지

-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양국 우호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현 시점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함.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법제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함
- 오늘 법제처-의회 입법연구소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음(필요한 경우, 양측 간 인력 교류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방안 숙고)
- 법제처는, ① 법령안의 입안에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까지 일괄 처리되는 전자 입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고, ② 한국 거주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위해 부동산, 금융, 출입국, 교통, 복지, 노동 등 실생활 관련 법령 정보를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제공 중임

○ 라힘 하키토프 소장 언급 요지

- 우리는 한국 법제처와의 교류·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특히 우리 연구소는 빠른 법령 개정과 입법 과정에의 국민 참여 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의회도 “My Opinion”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입법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
- 우리는 한국의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 시스템, 법령의 대국민 홍보 시스템, 종합 법령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 입법 지원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법령의 대외 홍보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이며, 우즈베키스탄의 법령을 영어, 한국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 소개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 중임
- 법제처와의 양해각서 체결 후 액션플랜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실무진을 통해 액션플랜 구상 필요

○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발표



-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와 법령 제개정 시의 체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입법 연구소 측은 우즈베키스탄 입법 연구소 소개 영상을 통해 연구소를 소개함

○ 의원 및 연구원들의 질의 응답

- 우즈베키스탄 하원 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회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

(질문 1) 국민에게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 입법예고를 40일 이상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후 법제처에서 심사함

(질문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국제조약도 등록되어 있는지?

⇒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공개함

(질문 3)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 다양한 원칙이 있으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양측 마무리 발언 요지

- 2017년은 변화가 시작된 해였으며, 우리 연구소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빠른 법령 개정과 국민 참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입법 시스템의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다른 언어로 우즈베키스탄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법 관련 부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법령 심사 권한을 국회에 이관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
- 향후 구체적인 액션 플랜 체결 등 빠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램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ROGRAM

"Modern approaches to lawmaking: Experience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SEMINAR

Date	April 26, 2019
Event place:	Legislative Chamber of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ashkent
Moderator	Rahim Hakimov – Director of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9.30-10.00	Registration
10.00-10.15	The opening and introduction of the seminar Rahim Hakimov – Director of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Kim Oe-Sook –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0.15-10.30	Sign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0.30-10.45	Lecture and presentation: "Legislative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speaker: Kim Nam-yeon Director(Head) of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Divis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0.45-10.55	Video present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0.55-11.10	Lecture and presentation: "The role of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in lawmaking proces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The speaker: Head of the Department of the LPRI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Ikhtiyor Bekov
11.10-11.30	Questions and answers
11.30-12.00	Wrap up of event Speakers: Rahim Hakimov – Director of the LPRI (Uzbekistan) Kim Oe-Sook – Minister of the Legislation (Republic of Korea)

3. 행사 사진





1. 방문개요

- 일시/장소 : 4.26.(금) 17:00 - 18:00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건물
- 참석자
 - 법제처 측(7명) :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이기재 사무관, 전병희 사무관, 김재우 참서관, 알렉 장(통역)
 - 우즈베키스탄 측(3명) : 루슬란벡 다블레토프 법무부장관, 노디르 쿠데이베르디비히 국제협력과장 등

2. 논의내용

- 루슬란벡 다블레토프 법무부장관 언급 요지
 - 법제처처장님의 연설로 포럼의 위상이 올라간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시하였으며, 우리는 한국의 발전사례를 배우려고 함.
 - 한국의 법제도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되며, 한국의 법령 제정 과정에서 법령 정비를 위한 정비 의견 설정 및 피드백, 국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에서의 법률 통과를 위한 업무 협의와의 업무 협의, 법령의 이행 과정에서의 감독 등에 대한 경험 공유를 희망함.
 - 이와 관련, ① 법령 개정 수요 발견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반영되는지, ② 법령 개정 시, 외부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와 다른 부처의 의견 반영과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③ 국회에서의 법령안의 통과 과정에서 법제처의 역할은 무엇인지, ④ 법령 시행 후 실생활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지금 즉답뿐 아니라 이러한 체계적 입법절차에 대한 실무적 교육 지원을 희망함.

○ 처장님 언급 요지

- 법무부장관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해드리면, 개별 법률은 소관 부처에서 초안을 작성하나, 예외적으로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의 전반적인 정비나 여러 소관 부처에 걸치는 법령의 일괄 정비를 법제처가 담당함. 또한 법령의 개정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그에 대해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함. 그리고 법제처의 심사 시 상위법 위반 또는 체계 정합성, 표현 등을 심사함.
- 구체적인 액션 플랜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6월 중 우즈베크 담당 과장의 방한 시 구체화된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함.

3. 방문사진



7 방문 성과 및 향후 계획

□ 방문 성과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라힘 하키모프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의 '18년 11월 법제처 방문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제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
- 연구소장은 하원의원을 겸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협력(시스템 분야)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되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가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재방문 합의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면담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내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의 6월 한국 방문 시 협력 방안 논의 합의

* Nodir Khudayberdievich, Head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 향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의 한국 방문 시 한국의 법제도 등을 안내하는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논의 추진

⇒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강화

□ 향후 계획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구체적인 협력 계획(액션 플랜) 논의

① 입법연구소와 구체적인 협력 방향 및 분야 협의

- 한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령안 편집기 등 관심 분야 협력 추진

② 협력 내용에 따른 액션 플랜(안) 마련 및 체결 행사 등 추진(하반기)

③ 액션플랜에 기초한 입법연구소 직원들의 역량강화 추진(하반기)

- 의회 입법연구소 직원들의 한국 방문 및 연수 추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

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협력 분야 구체화

- 방문 당시 논의한 내용 외에 입법지원시스템 분야 협력 논의 제안 추진

②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직원 역량강화 추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직원의 6월 방한 시 교육자료 마련 (법제교육과 협조)

③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액션 플랜(안) 논의

⇒ 우즈베키스탄과의 공공행정(법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후 장기적으로
공적개발원조 (ODA) 분야 협력 연계 추진

별첨 1 우즈베키스탄 약황

□ 일반사항

- 국 명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Republic of Uzbekistan)
- 수 도 : 타슈켄트(약 300만명)
- 인 구 : 3,325만명 (2018.12월)
- 면 적 : 447,400km²(한반도의 약 2배)
- 기 후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 : 우즈베키스탄(81%), 러시아(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팁인(2.5%), 고려인(0.6%)
- 언 어 : 우즈베키스탄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 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시 차 : 우리시간 -4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의회구성(총 250석)
 - 상원(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 총리 : 아리포프(Aripov)
 - 외교장관 : 카밀로프(Kamilov)
 - 상원의장 : 울다셰프(Yuldashev)
 - 하원의장 : 이스마일로프(Ismailov)

□ 경제현황 (2018년)

- GDP : 505억불
- 1인당 GDP : \$1,519
- 경제성장률 : 5.1%
- 화폐단위 : 솜(sum)(US\$1=8,400솜)(‘19.4월)
- 교역규모 : 338억불
 - 수출 : 142.5억불 / 수입 : 195.5억불
- 주요자원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 원유(6억배럴), 가스(1.1조m³)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 금(1,700톤, 11위), 우라늄(9.6만톤, 12위), 몰리브덴(6만톤, 11위)
 - 면화(2.3백만톤, 7위)

□ 최근 주요 정세

- 카리모프 대통령 ‘91.12월 대통령 당선 이래 계속 집권
 - ‘00. 1월 재선
 - ‘02. 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 ‘07.12월 재선
 -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15. 3월 재선
 - ‘16. 9월 서거(향년 78세)
 - ‘16.12월 대선
- ‘16.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92.1.29
- 공관설치 : ‘93.12월
 - 공관장 : 권용우 대사(‘16.5월 부임)
 - ※ 주한공관설치(‘96.1월)
 - 비탈리 펜 대사(‘17.5.2 아그레망 부여 / ‘17.7.18 신임장 제정)
- 교역규모(‘18년) : 21.39억불
 - 수출 : 21.1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0.22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등)
- 대우즈베크 투자(‘18년, 실투자액 누계) : 7억불
- 대한 투자(‘18년, 실투자액 누계) : 2,100만불
- 고려인동포 : 약 18만명 (CIS내 최다)
- 재우즈베크교민 : 약 3천여명

• 주요인사교류

- ‘92. 6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94. 6월 김영삼 대통령 방한
- ‘95.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97. 9월 술타노프 총리 방한
- ‘99.10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0. 6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한
- ‘05. 5월 노무현 대통령 방한
- ‘05. 8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한
- ‘05.10월 김원기 국회의장 방한
- ‘06. 3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6. 9월 한명숙 총리 방한
- ‘07. 5월 할릴로프 하원의장 방한
- ‘08.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8. 5월 한승수 총리 방한
- ‘08. 8월 북경 올림픽 계기 양자정상회담
- ‘09. 5월 이명박 대통령 방한
- ‘09. 8월 안상수 특사 방한
- ‘10.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1. 6월 무스타피예프 대법원장 방한
- ‘11. 8월 이명박 대통령 방한
- ‘12. 1월 박희태 국회의장 방한
- ‘12. 8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방한
- ‘12. 9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3. 1월 이재오 특사 방한
- ‘13. 5월 양승태 대법원장 방한
- ‘14. 6월 박근혜 대통령 방한
- ‘14.11월 정홍원 총리 우즈베크 경유
- ‘15. 5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6. 5월 황교안 국무총리 방한
- ‘16. 9월 이준식 부총리 방한
- ‘17. 3월 이준식 부총리 방한
- ‘17. 7월 박원순 서울시장 방한
- ‘17. 8월 쿠투카로프 부총리 방한
- ‘17. 9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한
- ‘17.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
- ‘18. 2월 김동연 부총리 방한
- ‘18.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방한
- ‘18. 5월 송영길 국방경제협력위원장 방한
- ‘18.11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방한
- ‘19. 4월 문재인 대통령 방한

□ 북한과의 관계

- ‘92. 1월 외교관계 수립
- ‘93. 7월 주우즈베크 북한대사관 개설
- ‘16. 8월 주우즈베크 북한대사관 폐쇄
- ※ 우즈베키스탄은 주북한 상주 대사관 미설치

Congratulatory speech

‘Legislation in an era of rapid modernization’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Oe-sook

السلام عليكم | 앓살라무 알리이쿰 (peace be upon you)

His Excellency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Ruslanbek Davletov,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inviting me to this forum. I am pleased and honored to visit Tashkent that is a beautiful city and was called “the oasis of Central Asia.”

There is a saying in Uzbekistan, “With clothes the new are the best, with friends the old are the bes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 2009. This year is the 10th anniversary of signing the MOU. For the past 10 years, we have continuously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the field of legislation and maintained our closer relation.

□ Proactive Administration

Modern society is witnessing a rapid change which happens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n era of rapid change, people might think that laws may hinder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a result, most countries are focusing on regulatory reform.

Most of regulations are designed to combat potential problems. However, even the regulations can become disconnected from reality over time. In particular, as the speed of chang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gap between the intent of laws and reality has widened. Therefore, our mission is to narrow the gap.

Our Ministry is making efforts to bridge the gap by pursuing “proactive administration.” When we interpret laws, we are trying to minimize regulation if not absolutely necessary. In addition, we are striving to reduce unnecessary intervention in order to allow new industries to self-regulat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 our Ministry is endeavoring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not to hamper social development.

□ Necessity of Developing a Legislative System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not only pursuing proactive administration but also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rough an online system is needed.

When we enact, revise and abolish laws, we should listen to

opinions of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 and examine the impact of revising laws. During the process, however, there should be no delay caused by technological problems in revising existing laws.

Our Ministry developed an online legislative system to reduce the time of revising laws and to ensure an effective and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We are now providing legal information online. As well as this, the legislative process takes place through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By using the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we revise the existing laws, examine the introduced bills, and promulgate laws. In other words, the steps in the lawmaking process can take place through the system. And the people in charge can share the progress they are making through the system. As a result, the system reduces the time of revising laws and improves efficiency.

In an era of rapid change, I believe that laws can timely respond to a new environment thanks to an integrated legislative system. Therefore, we have to take active steps to us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dvancements.

□ **Closing Remarks**

When I heard the theme of today's forum, various things came to my mind. In an era of rapid change, we have to strive to prevent people from thinking that laws may restrict technological development. I hope there would be various discussions to achieve

it.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Minister Ruslanbek Davletov** for inviting me to this forum.

I hope we continue our close relation in the future and this forum ends in success.

라흐맛 (감사합니다) Rahmat!

포럼 인터뷰 자료 [4. 25. 오전]

- 앓살라무 알라이쿰(이슬람권 공통 인사)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진행되는 개혁과 개방 정책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수교 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꾸어 왔고,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0년간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딱 10년이 되는 해에 제가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오늘 포럼의 축사자로 나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포럼 이름 (Tashkent Law Spring)처럼, 타슈켄트의 아름다운 봄에 이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도 포럼 세션에서 법제 시스템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며, 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내일 오전에는 의회 입법연구소(LPRI)에 방문하고, 오후에는 법무부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신북방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유라시아 국가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저도 법제처의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법제 분야 시스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라흐맛(감사합니다).

우즈벡 의회 입법연구소 말씀자료 [4. 26. 오전]

□ 인사말씀

- 앓살라무 알라이쿰(이슬람권 공통 인사)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우즈베키스탄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라 불린 이곳 타슈켄트 중에서도 의회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라힘 하킴오프(Rahim Yakimov)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1월, 소장님께서 법제처를 방문하신 것에 대한 답방으로 의회 입법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포럼 연설 소개

- 저는 어제 포럼 (Tashkent Law Spring)에서 급변하는 현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법령이 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령과 현실간의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먼저 법령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법령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 법령의 개정을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령의 개정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법령이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법제처는 법령안을 개정하기 위한 입안 첫 단계부터,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제출 및 공포 절차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기존 법령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 이러한 시스템 분야의 노하우를 우즈베키스탄 측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 · 협력

- 대한민국은 신북방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유라시아 국가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법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라흐맛 (감사합니다).

우즈벡 법무부장관 면담 말씀자료 [4. 26. 오후]

□ 인사말씀

- 바쁘신 중에도 법제처 방문단을 환영해 주신 루슬란벡 다블레토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포럼의 규모가 크고 많은 참석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해 11월 장관님께서 한국 방문 시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어서 장관님을 뵙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직접 와 보니 정말 도시가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 또한,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법무부장관님을 면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양국의 관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120억불에 달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방문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General Director)과, 외국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연 법제교류협력담당관(Director)입니다.

□ 법제처 소개 및 법제교류사업

- 우선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서, 행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위헌·위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사할 때 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령 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의미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 이와 더불어 해외 법제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중인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우리 법제처가 맺은 역대 두 번째 양해각서로 올해 10년째를 맞아 더욱 뜻깊은 방문이라 생각됩니다.

□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 · 협력

-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우리 법제처의 **한영수 국장**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개최한 회의(Urgent Issues for Further Enhancement of the Legal Expertise)에 참석하였고, 전직 법제처장님들 중 여러 분들께서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셨습니다.
- 작년에 우리가 주최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아카데미(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율도셰브 아지즈존(Yuldoshev Azizjon)** 교수가 참여하여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은 입법 개선 구상(Rulemaking Improvement Concept)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2018년 8월에 새 대통령령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자 입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법제처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국정 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법제 부분에서의 그러한 입법 개선 구상에 대해서 우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법제처는 법령안을 개정하기 위한 입안 첫 단계부터,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제출 및 공포 절차를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법령안의 개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부처의 공무원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법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 해당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우즈베키스탄 측의 전자입법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유하면 양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 **액션플랜(action plan)** 등을 체결하여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무리 말씀

- 법제처 방문단을 환대해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신북방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유라시아 국가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처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라흐맛 (감사합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cipan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legislative sphere according with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the actua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in assisting and supporting each other,

Desiring to establis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

The Participant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and acting within their respective areas of competence, aim to promote and develop mutually beneficial legislation-related cooperativ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obligations of both countr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This MoU will not be construed as creating any legally binding rights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Paragraph 2
Cooperation Areas**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may take the following forms:



- a. exchange of legislative information such as data on enactment and policy, relevant publications and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areas concerned;
- b. carrying out visiting programs for respective personnel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their capacity, in order to advance mutu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 c. endeavoring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 and strengthen professional capacity through meetings, seminars, symposiums on matters of common and mutual interest;
- d.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ir employees in the programs of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and scientific capacity;
- e.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chnology regarding legislation; and
- f.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by both Participants.

Paragraph 3

Coordination of Joint Activities

For the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e Participants shall discuss specific topics and plans three months prior to initiating the exchange program.

The designated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on behalf of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ll b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The designated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oU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the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Division.

Paragraph 4

General Provisions

The Participants will cooperate and collaborat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reciprocity, subject to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nd legal procedures.



This MoU does not restrict the Participants from cooperating with other governmental bodies and organizations in areas covered by this MoU.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and personnel of the Participants.

Paragraph 5 Final Provisions

This MoU will enter into force upon signing and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is MoU is signed in Tashkent on the day of April, 2019, in English, Korean and Uzbek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KIM OE-SOOK
Minister**

Signed date: " _ " _____

**RAHIM HAKIMOV
Director**

Signed date: " _ " _____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 간의 협력 양해 각서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법 중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법제 분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 현실을 고려하며,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1. 목적

당사자는 이 협력 양해 각서(이하 “양해 각서”라 한다)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법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당사자의 국내 법령, 국제법 및 당사자 각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

양해 각서는 국제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2. 협력 분야

당사자 간의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1) 입법정보, 출판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환
- (2) 상호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간 교류 및 방문
- (3) 공동연구, 회의, 워크숍, 세미나, 훈련 및 원탁회의의 조직
- (4) 양해 각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확립하기 위한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국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 촉진
- (5) 법제 분야 정보기술의 발전 경험 공유
- (6) 그 밖에 당사자 간 합의된 다른 형태의 협력

3. 공동사업의 조정

당사자는 양해 각서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작 3개월 전에 구체적인 주제와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양해 각서의 이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제처를 대표하는 책임부서는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로 한다.

양해 각서의 이행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를 대표하는 책임부서는 국제관계담당관실(International Relation Department)로 한다.

4. 일반 조항

당사자는 당사자 각 기관 내부 절차, 법적인 절차 및 평등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양해 각서는 양해 각서에 명시된 분야에서 당사자가 다른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범위 내에서 양해 각서를 이행한다.



5. 최종 조항

양해 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양해 각서는 2019년 4월 26일, 타슈켄트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영어본, 한국어본 및 우즈베키스탄어본이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법제처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를
대표하여

김 외 숙
법제처장

라힘 하키모프
입법연구소장

별첨 5 우즈베키스탄 측 인사들 프로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프로필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이름: 루슬란베크 다블레토프
(Ruslanbek Davletov)
- 출생일 및 나이: 1980년 6월 1일(39세)

○ 학력

- 1996-1998 World Economy and Diplomacy 대학
- 2001-2003 World Economy and Diplomacy 대학 석사
- 2003-2007 타슈켄트 주립대학(경제학)

○ 경력

2001 ~ 2004	우즈베키스탄 주정부 근무
2004 ~ 2012	우즈베키스탄 내각 근무
2012 ~ 2014	법제도 분야 업무 담당
2014 ~ 2016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조정국장 * 의회 입법연구소와 별개의 기관임 지금은 폐지된 대통령 산하 입법조사연구소
2016 ~ 2017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제1차관
2017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 프로필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 산하 입법연구소장

○ 이름: 라힘 하키모프

(Rakhim XAKIMOV)

○ 출생일 및 나이: 1983년 1월 2일(36세)

○ 학력

2003 나망간시 국립대학교 졸업

2005 타슈켄트 법과대학 석사

○ 경력

2005 ~ 2006 우즈베키스탄 (구)입법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2006 ~ 2008 우즈베키스탄 (구)입법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008 ~ 2010 우즈베키스탄 (구)입법조사연구소 수석연구원

2012 ~ 2015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립행정아카데미 부교수
(겸임)

2011 ~ 2015 우즈베키스탄 (구)입법조사연구소 입법모니터링부
부서장

2015 ~ 우즈베키스탄 하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2017. 12.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